의안번호	제379호
의 결	2023년 9월 일
연 월 일	(제 회)

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박진희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8월 24일

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진희 의워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9 발의연월일 : 2023년 8월 24일

발 의 자 : 박진희, 이동우, 김종필, 김호경, 박지헌, 변종오,

유재목

1. 제안이유

본 조례는 「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근거하여 충청 북도의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에, 상 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률과의 통일성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을 변경함.

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

- →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나. 개정된 상위법률의 제명과 법률상의 용어를 반영하여 정의규정을 정비함 (안 제2조)
- 다. 현행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종합계획(3개년 계획)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자 상위법 제10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(5개년 계획)와 동일하게 5개년 계획으로 변경함(안 제4조)
- 라. 상위법률의 관련 조문을 반영하여, 육성 및 지원 사업의 내용과 범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(안 제5조)

- 마. 행정안전부 「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」(2023.7.)에 근거하여 현행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회의 개최요건을 수정하고, 위원의 임기, 회의 소집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(안제8조, 안 제10조)
- 바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, 제3조, 제6조, 제7조, 제10조의2부터 제18조까지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첨부

다. 협 의 : 충청북도 바이오식의약국 바이오정책과

라. 조례안 예고 : 예고대상(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"를 "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국내·외 기관 등의"를 "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의육성 및"으로, "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충북의"를 "충청북도 의료산업의 진흥과"로 한다.
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부분) 제1호 중 "(이하 "첨복단지"라 한다)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 화"를 "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"로, "「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"을 "「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"으로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2호 중 "첨복단지"를 "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"로, "말한다.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"를 "말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"신약"이란 「약사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의약품을 말한다.

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. 제3조 중 "첨복단지를 성공적 으로 조성하기 위해"를 "오송첨단의료복합 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"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"(첨복단지 육성 종합계획)"을 "(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.

① 도지사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 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 중 "첨복단지"를 "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"국·내외"를 각각 "국내외"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"첨복단지"를 "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"로 한다.

- 4.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육성 시책
- 5.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기술·투자·인력 지원 방안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5조(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 사업) 도지사는 오송첨단의료복합 단지를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
 - 2. 법 제11조제5항의 각 호에 따른 업무 지원

- 3. 법 제11조제6항의 각 호에 따른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설립 지원
- 4. 그 밖에 도지사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의 제목 "(위원회 설치)"를 "(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위원회의설치)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첨복단지의"를 "도지사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"로, "지원을 효율적·체계적으로 추진하기"를 "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"로, "첨복단지 육성 및 지원 위원회"를 "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위원회"로, "설치한다"를 "둔다"로한다.

제7조의 제목 "(기능)"을 "(위원회의 기능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"첨복단지"를 "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"로, "지원 종합계획"을 "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"첨복단지 입주기관"을 "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육성 및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그 밖에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입주의료연구개발 기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 제목 "(위원회 구성 등)"을 "(위원회의 구성)"으로 하고, 같은 조제1항 중 "위원장과"를 "위원장 및"으로, "포함한"을 "포함하여"로, "구성하되,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"를 "구성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"을 "도지사가 다음"으로, "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

성별 균형을 고려하여"를 "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관련"을 "소속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입주기관·단체"를 "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, "자"를 "사람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위원장은 관련업무를 소관하는 경제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- ④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

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의"를 "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간사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된다.

제11조 중 "때 에는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"를 "때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"로, "관계기관과 관련단 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제출" 을 "관련 기관·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"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"(수당 등)"을 "(수당 및 여비)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

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관계전문가에게는"을 "관련 분야 전문가에게"로, "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"를 "수당 및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.

제13조의 제목 "(연구개발사업 지원)"을 "(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종전의 제1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"첨복단지"를 "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"로, "입주기관"을 "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"으로, "연구개발사업을 예산의 범위안"을 "사업을 예산의 범위"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위해"를 "위하여"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"(재단에 대한 지원)"을 "(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지원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재단"을 "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"으로, "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"을 "경비를 예산의 범위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재단"을 "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"으로, "공무원"을 "소속 공무원"으로 한다.

제15조의 제목 "(입주기관 지원)"을 "(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종전의 제1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"첨복단지 내에 우수기업 유치등을 위해"를 "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"로 하고,

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"교육훈련보조금"을 "교육훈련보조금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"사업"을 "지원"으로 한다.

1. 「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」에 따른 감면

제16조의 제목 "(재정지원의 중단 등)"을 "(지원결정의 취소)"로 하고,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(지원결정의 취소) 도지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
- 1. 관계 법령 및 이 조례가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
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
- 3. 지원금의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
제17조의 제목 "(사후관리)"를 "(사업의 점검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전단 중 "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"을 "사업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"으로, "보고하게"를 "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검사하게"로 하며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입주기관"을 "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"으로, "받 아야"를 "받아야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8조의 제목 "(준용)"을 "(적용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"로 한다. 제19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안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제1조(목적) -----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 하는 국내・외 기관 등의 지원 적 조성과 입주의료연구개발기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 등의 육성 및 -----충청북도 의료산업의 진흥과 -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성공 적으로 조성하여 충북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(정의) ① -----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"(이 하 "첨복단지"라 한다)란 의료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-----연구개발의 활성 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 하여「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--「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 에 관한 특별법 | -----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에 따 라 지정 · 고시된 단지를 말한 다. 2. "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" 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

- 된 <u>첨복단지</u> 지원 기관을 <u>말</u> 한다.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
- 3. "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"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 첨단의료 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.(이하 "입주기관"이라 한다)

<신 설>

- 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 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<u>첨</u> <u>복단지를 성공적 으로 조성하기</u> <u>위해</u> 지역 바이오산업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 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4조(첨복단지 육성 종합계획)① 도지사는 첨복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매 3년 마다 첨복단지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-- <u>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</u> -------<u>말</u> 한다.
- 3. "신약"이란 「약사법」 제2 조제8호에 따른 의약품을 말 한다.

-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.
- 제4조(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수립) ① 도지사는 오송첨단의료 복합단지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오송첨단의료 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다.
- 1. 첨복단지 비전 제시
- 2. 국 · 내외 첨단의료산업의 현 황 및 발전 전망
- 3. 국·내외 첨단의료산업의 입 지여건과 실태
- 4. 첨복단지 입주기관 육성시책
- 5. 첨복단지 입주기관 자금 기 술 · 인력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<u>첨복단지</u> 발전을 위 6. ---- <u>오송첨단의료복합단</u> 하여 필요한 사항
- 제5조(육성사업) ① 도지사가 첨 복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중점적 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다 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신약개발 또는 의료기기 개 발을 행하는 입주기관의 육성
 - 2. 첨단의료기기와 의약관련 제 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한 전문 임상센터(동물 실험센터 를 포함한다)의 육성
 - 3. 신물질, 신의약품과 의료기기

2	 	 	

- 1.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----
- 2. 국내외 -----
- 3. 국내외 -----
- 4.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육성 시책
- 5.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기 술·투자·인력 지원 방안
- ス] -----
- 제5조(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 성 및 지원 사업) 도지사는 오 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과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
 - 2. 법 제11조제5항의 각 호에 따 른 업무 지원
 - 3. 법 제11조제6항의 각 호에 따

융합제품의 개발

- 4. 그 밖에 도지사가 첨복단지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
-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국내 외의 우수인력 기 관 등의 유치와 이와 관련된 의 료기관 및 연구소의 설립 · 관련 기업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6조(위원회 설치) 첨복단지의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・체계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첨복단지 육성 및 지원 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 한다.
- 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첨복단지 육성 및 지원 종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- 2. 첨복단지 입주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도 | 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

- 른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설 립 지원
- 4. 그 밖에 도지사가 오송첨단 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- 제6조(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 성위원회의 설치) 도지사는 오 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--- 지 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----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위원회----- 둔다. 제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제7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-
 - 1.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-------- 지원을 위 한 종합 계획 -----
 - 2.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육성 및 --
 - 3. 그 밖에 오송첨단의료복합단 지의 성공적 조성과 입주의료 연구개발기관의 육성 및 지원

- 제8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 전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.
 - ② 위원은 <u>다음</u>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<u>자 중에서 도</u>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
 - 1. 충청북도 관련 실・국장
 - 2. (생략)
 - 3. 입주기관·단체의 임원
 - 4. <u>기타</u> 변호사·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
 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<u><신</u>설>

고 인정하는 사항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
위원장 및
포함하여
구성한다.
② <u>도지사가 다음</u>
<u>사람 중에서 임</u>
명하거나
<u>.</u>
1 소속
2. (현행과 같음)
3.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
4. 그 밖에
사람
 ③ 위원장은 관련업무를 소관하
는 경제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
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
다.
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
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
<u> 게 네런 ㅂ 기기 ㅌ 기진 시중으</u>

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

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 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 하며,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.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첨복단지 지원 관 련 담당과장으로 한다.

<신 설>

제11조(의견청취 등) 위원장은 위 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에는 관계공무 원과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 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-----견을 듣거나 관계기관과 관련단 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로 해산한다.

제10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- ----- 개의(開議) 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----<삭 제>
- 제10조의2(간사) ① 위원회에 위
 - 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을 둔다.
 - ② 간사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 지 육성 및 지원 관련 업무 담 당 과장이 된다.
- 제11조(의견청취 등) ------

 - ----- 때에는 소속 공무원
 - ----- 관련 기관·단체에

대하여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

- 제12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제12조(수당 및 여비) ① -----

위원과 <u>관계전문가에게는</u> 예산 의 범위에서 <u>「충청북도 각종</u>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.

<신 설>

- 제13조(연구개발사업 지원) ① 도 지사는 첨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<u>입주기관</u>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<u>연구개발사업을 예산의 범위안</u>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1. ~ 3. (생략)
 - 4. 그 밖에 연구개발지원을 <u>위</u> <u>해</u>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
- 제14조(재단에 대한 지원) ① 도 지사는 <u>재단</u>의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<u>경 비를 예산의</u>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도지사는 <u>재단</u>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

<u>판단 군야 선군가에게</u>
<u>수당 및</u>
·.
②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
지급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
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
상조례」를 적용 또는 준용한
<u>다.</u>
제13조(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
원)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-
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
사업을 예산의 범위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 <u>위</u>
하여
제14조(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
<u>단에 대한 지원)</u> ①
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
<u>단 경비를 예산의</u>
범위
② 오송첨단의료산업진
흥재단

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 제15조(입주기관 지원) ① 도지사 는 첨복단지 내에 우수기업 유 치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- 1. 지방세 감면 조례에 따른 감 1. 「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」 면
- 2. · 3. (생략)
- 4.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 금 지원
- 5. (생략)
- 6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
- 제16조(재정지원의 중단 등) ① 제16조(지원결정의 취소) 도지사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 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 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,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.
 - 1. 관계 법령 및 이 조례가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
 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

<u>소속 공무원</u>	
제15조(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	에
<u> 대한 지원)</u>	
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	우
수기업 유치를 위하여	

- 에 따른 감면
- 2. · 3. (현행과 같음)
- 4. ----- 교육훈련보조 금의 -----
- 5. (현행과 같음)

----- 지원

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 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
- 1. 관계 법령 및 이 조례가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
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
- 3. 지원금의 목적과 다른 용도 에 사용한 경우

- 3. 재정지원금의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거나 상환하여야 할보조금 등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있다.
- 제17조(사후관리) ① 도지사는 지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<u>입주</u> <u>기관</u>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<u>받 아야</u> 하며,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・확인하여야 한다.
 - ③ 도지사는 입주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라 관리·정산·지도·감독 등을 해야 한다.
- 제18조(<u>준용</u>) 이 조례에서 정한 지사항 외의 재정지원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「충청</u> 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를 준용

제17조 <u>(사업의 점검)</u> ①
사업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-
보고하게 하거나
관련 공무원에게 검사하게
<u><후단 삭제></u>
② 입주의
료연구개발기관
받아야
<u><삭 제></u>
제18조 <u>(적용)</u>
<u></u> 「충청
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

한다.
제19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
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u>따른다</u>. <삭 제>

관계법령

□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[시행 2021.10.21.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0. 1. 1 8., 2016. 1. 6.>

- 1. "첨단의료복합단지" 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.
- 2. "의약품"이란 「약사법」에 따른 의약품을 말한다.
- 3. "의료기기" 란 「의료기기법」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.
- 4. "보건의료기술"이란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을 말한다.
- 5. "의료연구개발"이란 의약품,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·개발하거나 연구·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연구·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.
- 6. "의료연구개발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서 의료연구개발의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말한다.
- 가.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
- 나. 의료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·운영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
- (1) 의료기관
- (2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
- (3) 연구기관
- (4) 정부출연기관 등
- 7. 삭제 <2017. 10. 24.>
- 8. "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"이란 제31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 첨단 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.

제6조(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첨단 의료복합단지의 입지가 선정되면 해당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·고시하고,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 기관 및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0. 1. 18.〉

□ 약사법 [시행 2023.7.21.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~ 7.(생략)
- 8. "신약"이란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.
- 9. ~ 14.(생략)
- 15. "임상시험"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(藥動)·약력(藥力)·약리·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(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 다만, 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제외한다.
- 16. "비임상시험"이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안전성에 관한 각종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험실과 같은 조건에서 동물·식물·미생물과 물리적·화학적 매체 또는 이들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.
- 17. "생물학적 동등성시험"이란 임상시험 중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생체시험으로서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두 제제의 생체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을 말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1. 첨부제외 관련규정

○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」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 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사 유

○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내용을 보다 알기 쉽도록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진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